

정하고,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토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또는 정비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4월 10일 제출되어 2000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사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사무의 일부가 교육감에게 이양되어 그 권한의 일부를 연금취급기관장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며,

○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수행하고 있는 무인가 교육시설의 단속권한사무에 대한 위임사무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제7호)

○ “사회교육시설과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제11호)

○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초·중등 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13호)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99.1.29 개정, '99.7.30 시행)으로 교육감에 이양된 연금사무에 관한 권한 중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99.8.31개정, 2000.3.1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과, 현재 지역교육청 교육

장이 수행하고 있는 무인가 교육시설의 단속권한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9조 중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7,369명”을 “7,278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7,351명”을 “7,260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의 총수를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